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61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이주희 · 김기표 · 이훈기  
박균택 · 강득구 · 민병덕  
서미화 · 권향엽 · 손 솔  
송재봉 · 이정현 · 김 윤  
김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게 됨.

그런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의 경우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에 폐지되면서 지원금의 상한 제한이 없게 되어 위약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음.

또한, 요금할인 약정의 경우 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보다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3  
신설 등).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제32조의2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149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제32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3(이동통신서비스 해지·변경 시의 위약금)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위약금(지원금의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51조의3제1항 중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제32조의11제1항, 제32조의15제1항 또는 제32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97조제6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제32조의2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약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

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위약금(지원금의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  
-----  
-----제32조의11제1항, 제32조의15제1항 또는 제32조의23제1항-----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8조제1항(제32조의23제2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8. (생략)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

7.·8. (현행과 같음)